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96. 12. 1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11. 23. 마  
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6. 11. 23.

다. 상정일자 : 제42회임시회 제6차위원회  
( '96. 12. 12 )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병현 하수  
과장)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  
해대책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마  
련토록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관리, 운  
용계획 수립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재해예방등의  
용도등으로 사용을 제한함.(안 제4조)

○ 재해대책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우  
하여 회계공무원(기금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출납폐  
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  
출토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  
수)

○ 동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  
책기금을 동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 지방자  
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세중 보통세인 면허세·재산세·종  
합토지세의 전3년간에 걸친 수입결산  
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  
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규정된  
바와같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  
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  
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  
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  
업 및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으로 한정되어 있음.

○ 기금운용관은 하수과장이고 출납공무원  
은 하수계장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  
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  
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 기금 출연금으로  
1억 4,307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  
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본조례안이 제  
정되기 까지 긴급 재해대책 비용은  
어디서 사용하였는가?

○ 답변요지(하수과장 조병현) : 긴급재해대  
책은 예비비에서 사용해 왔고, 일부는  
긴급 수해복구비 예산을 사용하였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사항 :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제출년월일 : 1996. 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토록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관리, 운용계획 수립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재해예방등의 용도등으로 사용을 제한함.(안 제4조)

다. 재해대책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대하여 재무회계 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기금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1996. 8. 8 법률 제5153) 제63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필요없음

별첨 :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총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하수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하수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 12. 1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11. 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6. 11. 23.

다. 상정일자 : 제42회 임시회 제6차위원회 (‘96. 12. 12)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병현 하수과장)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방단 운영, 임무, 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96. 6. 7.)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고, 수방단의 임무(재해사전대비, 재해발생지역 예찰주민대피,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등)를 보완하였음.(안 제3조)

○ 수방단의 조직중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명시하였음(안 제4조)

○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함.(안 제5조)

○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95. 12. 6.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 6. 7.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에 보면 수방단원에 대한 조직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인 수방단 최저인원에 대한 구성원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조례내용상 구성원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외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용봉 위원) : 조례안 제6조의 편성을 보면 최저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 답변요지(하수과장 조병현) :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함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함.

○ 질의요지(유용봉 위원) : 수방단원의 예우 차원에서 식대등 부수적인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 답변요지(하수과장 조병현) : 자연자조 차원의 지역 봉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은 없으나 재해대책 시행령 제14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등 지원대책이 일부 있음.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재해발생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데 공상 또는 사망시에 대한 보험등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 답변요지(하수과장 조병현) : 법령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후 보고 하겠음.

5.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12. 12. 김유현 위원외 1인

나. 수정 이유

- 조례안중 구성원수에 대한 규정 신설코자 함.

다. 수정안 주요골자

- 안 제4조에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을 신설